

외국의 사례를 통한 축산업등록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축산업에 대한 환경·위생측면의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등 국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발전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해야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한 건강한 가축의 생산 및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의 확립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필수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림부는 생산단계에서의 기본과제인 축산업등록제를 통하여 축사소독시설·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 후에는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업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한편 축산업등록제를 통하여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정보교류 확대를 촉진, 자율성을 높이는 등 선진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등록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두당 적정 사육면적 확보의무강화, 조사료포확보를 통한 축산분뇨처리 및 경종농업과 유기적 순환방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 도입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시행작업의 일환으로 농림부는 지난 6월 25일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교수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록제 시행방안 공청회에서 축산업 등록 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의 규모가 한·육우의 경우 사육시설이 300㎡이상(30두)인 농가, 젖소는 100㎡이상(10두)인 농가, 돼지는 50㎡이상(50두)인 농가, 닭은 300㎡이상(3천수)인 농가이며, 등록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9,000호(전체 한·육우 농가의 4.3%), 젖소 11,000호(전체 젖소 농가의 94%), 돼지 10,000호(전체 양돈농가의 59%), 닭 3,800호(전체 양계농가의 2%)로 모두 34,000호로 예상된다. 농림부가 이날 발표한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되, 기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법 시행후 2년 이내(2005년 12월 26일)에 등록해야 하나, 한·육우의 경우 2005년 시행령을 개정, 100㎡이상(10두 규모) 농가 20,000호를 오는 2006년까지 등록토록 할 계획이며, 총 등록농가수는 54,000호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EU의 각 국도 농장별 농경지면적확보, 사육두수 상한설정, 분뇨발생 및 사용량 규제, 가축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 확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축산업등록제를 어떻게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궁극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대상농가들의 우려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단계적 발전방안 등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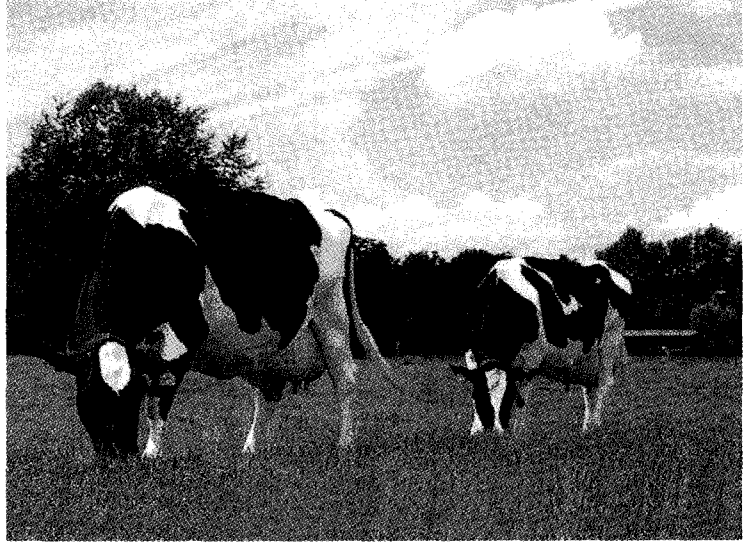
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유럽연합(EU)

축산업의 정책적 규제는 환경 보존을 위해 출발하였으나 90년대 후반 들어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 BSE), 구제역 등의 잇단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안전성 관리강화 등을 위해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규제사항은 농가 등록·허가 실시 외에,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분뇨 발생량 제한, 가축의 출생·이동·판매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 및 처분제한 등이다. 돼지·닭의 경우 농가단위, 소는 개체까지 식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U위원회는 1997년 「소의 증명·등록 시스템의 확립 및 쇠고기·쇠고기제품의 표시에 관한 규칙(No.820/97)」에 따라 소의 식별제도를 보다 강화했다. 가축사육밀도를 낮추는 경우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데 사육밀도가 ha당 1.4가축단위 미만일 경우 보조금 100ECU를 지급하고 있다.

□ 네덜란드

50년대에 처음 개체식별제도를 도입한 후, 70년대에는 모든 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였고, 80년대에는 예방접종 등 등록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가축분뇨발생량을 규제하기 위해 농가별로 농경지면적, 가축두수, 가축의 품종 등에 대한 등록을 실시했다. 80년대 단위농지면적에 대한 분뇨생산·시용 허용량 제한을 시작으로 96년 이후 분뇨와 화학비료 등 모든 미네랄 공급요소를 포함, 미네랄 허용량을 농가별로 제한했다(MINAS, Mineral Accounting System). 이 방식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부터는 모든 농가의 의무사항이 되었다. 미네랄 사용기준 초과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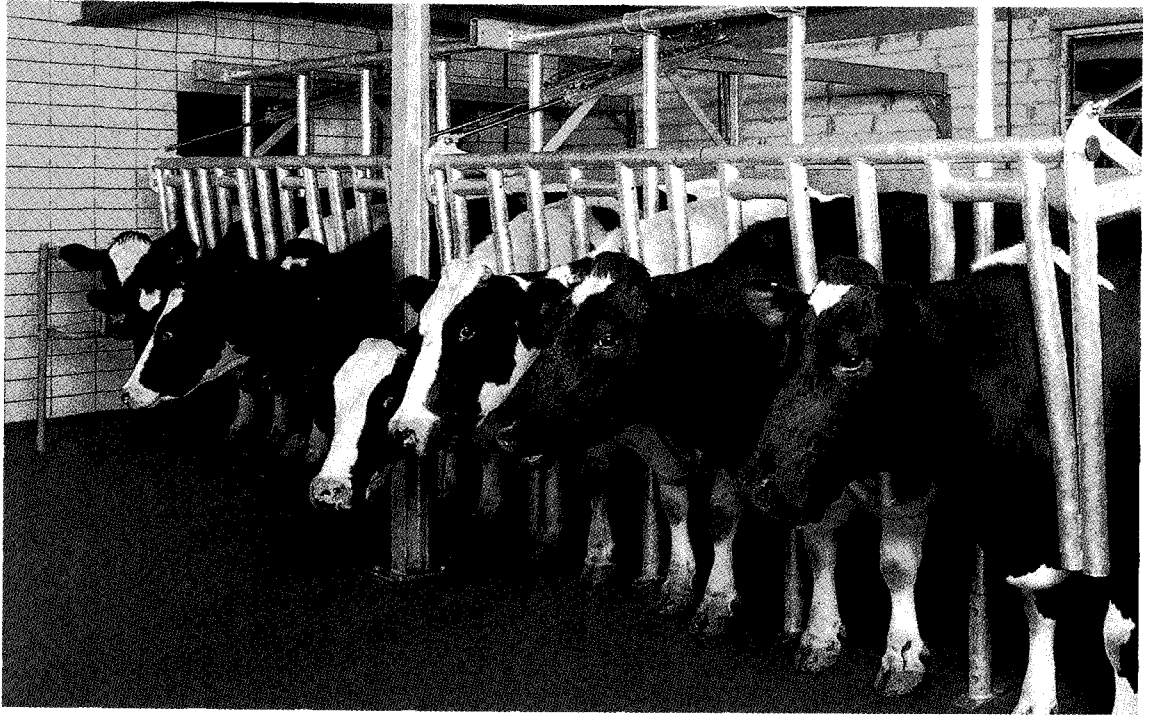
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지하려는 것이다.

□ 벨기에

모든 가축을 출생사에서 도축시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 닭)로 전산등록(SANITEL)을 실시하고 있다. SANITEL에 미등록시 가축의 출하·이동·판매 등이 불가능하고, 법정질병 감염시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에서 돼지·닭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한 환경자격증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해 취득케 하고 있다. 가축분뇨·화학비료 사용량제한, 가축축산농의 사육규모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사육규모 상한은 젖소 100두, 육우 300두, 모돈 300두, 가금류 70,000수이다.

□ 영국

98년부터 모든 소 사육농가에 소의 출생·이동·도축사항 등을 기록·증명하는 패스पोर्ट를 발급하고 있으며, 패스पोर्ट가 없는 경우 가축의 이동·판매·도축을 제한하고 있다. 슬러리, 사일로 및 연료저장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규격 적합의무 부과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별로 질소비료 살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목초지 등 농경지면적에 따라 사육두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덴마크

축산농가의 위치규제, 87년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분뇨저장시설설치 의무화, 가축두수와 분뇨의 농지환원면적에 관한 기준에 의한 녹피작물(green cover) 재배 의무화 등 사실상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축사시설을 건축·확장·개조 이전에 그 계획서를 지자체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며, 99년 10월말 부터는 가축단위 250이상의 농장개설과 규모확대시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받아야 한다. 농가별 축산분뇨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제한, 농경지 면적당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사용량 상한을 설정했다. 면적당 가축사육두수는 ha당 모돈 5.2두, 비육돈 17.6두, 젖소 2.3두이다.

□ 프랑스

가축(소 등)의 농장단계 등록제도가 1969년부터 도입되었다.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별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치, 가축분뇨생산기록부 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축산업자는 소가 태어날 때 1주 이내에 성별 및 품종, 출생월일, 농장번호 등의 식별번호(10자리)를 기재한 이표를 부착하여 등록하며, 등록된 소에는 패스포트(소의 신원, 위생상태, 지원금에 관한 정보 등)가 자동적으로 발부되며, 이후 이 패스포트는 소의 매매 및 보조금의 수취, 수의사의 진단과 도축관리 등에 사용되어 관련조치에 관한 기록이 남게 된다. 1개월 이상 된 모든 소에 대해 이러한 조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 대만

97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양돈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목업 경영자로 하여금 축산사업장을 등기토록 98년 8월 의무 부과했다.

등기대상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지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기요건은 농장책임자나 주요관리인은 직업학교이상의 수의·축산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훈련과정을 수료(1개월 이상)한 자 또는 2년 이상의 현장 실무경험자이어야 한다. 관련법령규정의 제시기준에 부합되는 축산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등기절차에 있어 등기는 신청서를 구비하여, 소재지 현·시에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 후 자격을 갖춘 자에게 등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기사항 변경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을 해야 한다. 축목장은 전담수의사를 두거나,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축산 목장 미등기, 변경사항 미등기의 경우에는 30,000 - 90,000원(元)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일본

유럽과 같은 축산업등록 및 규제제도는 없으나 BSE가 확인된 2001년 9월 10일 이후 추적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어 2002년 말 까지 모든 소에 이표를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JA全農은 구입한 쇠고기의 전력(history)을 점포나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추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02년 2월 21일부터 시험가동에 돌입했고, 각 현 차원에서 추적관리시스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기별로 부착된 10자리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생년월일, 품종, 출하일자, 도축일자, 출하처 등의 정보와 BSE검사결과가 표시된다.

축산업등록제는 축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위한 것이며 친환경축산 실현과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확보한 축산물을 생산자 스스로 생산토록 하는 장치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등록대상은 최종적으로 전두수로 하되 단계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질병은 예외가 없을 뿐 아니라 어느 한 농가의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인해 전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다만 농가들이 등록제 시행시 각종 신상 및 시설규모, 사육규모 등의 기록화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각종 세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개인 및 농가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유지와 세제 부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제 시행에 따른 행정관리를 위한 축산·수의담당 인력이 대부족한 상황이어서 과연 실질적인 사업 전제가 가능할지 우려가 앞선다. 따라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정원제'에 등록제 시행에 따른 인력배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의 구제역 발생으로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이미 가축질병예방법과 축산법을 개정해 왔고, 이제 축산업등록제를 통해 양축농가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등록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가려면 농가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따라 주고 과연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었을 때 그 본래의 의미가 지켜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가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의 도입과 잘못된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밝힐 수 있어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잘 수습하려는 목적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 ㉞

필자연락처 : ☎ 02)880-1255

자료출처

축산신문

「선진국 축산업 규제 어떻게 하나」2003년 6월 25일자

축산신문

「규제아닌 잘하는 농가 혜택받는 제도돼야」2003년 6월 30일자